

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24일

나. 발 의 자: 이상호, 강승수, 김민성, 김영길, 김영태, 김원섭,
김재우, 김정도, 박교상, 박세채, 소진혁, 신용하,
이명희, 이정희, 이지연, 장미경, 장세구, 정지원,
추은희, 허민근 의원(20명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6월 4일

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상 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안전 및 화재 예방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상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 지원 규정 신설(안 제4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
 - 「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6조의2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전통시장·상점가 등의 화재예방 시설의 개선 사업과 화재공제 가입·화재복구 등 화재 안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화재 발생 후 피해 상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뿐 아니라 화재위험 점검 및 아크 차단기¹⁾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및 시설의 개선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1) 아크차단기 : 전기 배선 및 전기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크(스파크) 현상을 감지하고 이를 차단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전기안전장치

- 다만, 아크차단기의 설치와 화재공제 가입 등에는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바, 조례 개정에 따른 구체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효과적·일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

-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화재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이 필요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사업 실시 전 설치희망 상가 파악 및 수요조사를 통해 단계적·순차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
- 효과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선로 안전 점검의 병행 실시가 필요함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